# 준비서면

사 건 2025드단22521 이혼등

원 고 최남회

피 고 김경랑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투병 및 정신질환을 위하여 식단, 운동 등 백방으로 도움을 줬고, 이러한 피고의 노력으로 원고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2025. 4. 12. 이혼 의사는 합치된 바 없고 이 사건 소장을 받고서야 이혼 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고는 아래 항을 달리하여 픽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원고는 투병한 사실도 없으며, 정신병 환자도 아닙니다.

① 피고는 원고가 마치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병세가 있어 몇 달간 투병하였

고, 이를 극진히 간호한 것처럼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전립선과 대장 쪽이 약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듣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정성스레 모든 식단을 준비하고, 식이요법 등을 통해서 원고의 병을 개선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는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한 것이 다이며 오히려 식단조절 및 운동을 통해서 원고가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왔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전담하였고, 실제로 급여 모두 피고에게 지급해온바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인이 먹는 정도의 평범한 저녁 식사 한 끼를 차린 것이 원고의 건강을 위하여 극진히 간호하고 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과 성격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개발자이자 프로그래머로 혼인 기간 내내 프리랜서로 근무한바, 애초에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원고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소요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프리랜서 개발자로서 계약한 것이기에, 원고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또는 동료와 갈등이 있어 해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사실이 아닙니다.

원고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마저도 피고와의 잦은 갈등, 피고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스스로 내방한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알기 위하여 정신과에 간 것이고, 원고가 어떤 정신적 질환도 없었음을 피고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정신과에 간 적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기간 내내 원고를 정신병 환자로 치부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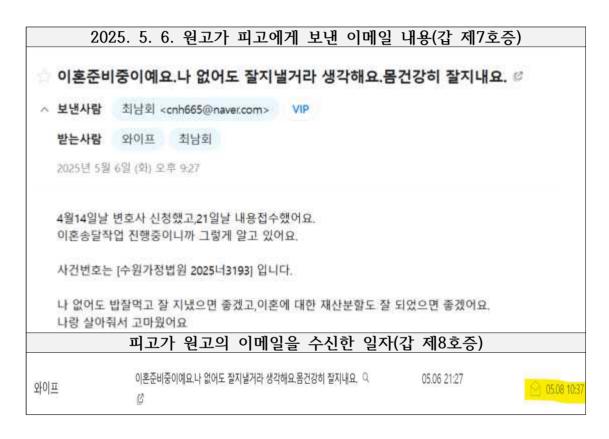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극강T'라고 부르다가, 성인ADHD가 있는 것 같다더니, 돌연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혼자서 원고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원고는 정신과에 방문하여, 원고가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피고와의 갈등임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수차례 부부상담을 받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진지한 호소를 외면한 채 원고가정신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원고는 정신병자이기에 내 말대로 하는 게 맞다'는 식의 태도에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답변서에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 이혼을 최대한 빠르게 하자고 재촉한 것은 피고입니다.

원고는 2025. 4. 21. 조정신청서에서 2025. 4. 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에 관하여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혼할 거냐'며 반복적으로 물으며 원고의 답을 유도한 것도 피고이고, 집에서 나가라고 일갈한 것도 피고입니다. 이혼하겠다는 원고의 답에 5월 초는 너무 멀기에 4월에 정리해버리자고 재촉한 것 역시 피고입니다. 원고는 2025. 4. 12. 집에서 나왔고, 강원도 원주에서의 프로젝트도 포기한 채 피고의 뜻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2025. 4. 14. 대리인을 선임하여 2025. 4. 21.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2025. 7. 26. 이 사건 소장을 받고서야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본 래 조정으로 시작된바, 2025. 4. 21.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메일로 이혼조정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리고 해당 사건번호까지 전달하였고, 피고는 2025. 5. 8. 오전 10시경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미 2025. 5.경 알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2025. 5. 12. 및 2025. 6. 10. 폐문부재로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원고와 싸운 것도 아니고, 원고가 단순히 기숙사 복귀를 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한 것이라면, 2025. 5. 6. 원고의 이메일에 피고는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해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가 조정이혼을 제기한 것을 이미 알고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던 채로 그저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야말로 회피적인 성향이라고 할만하며, 원고는 그간 겪어 온 피고의 회피적이고

독단적인 성향에도 어떻게든 혼인을 이어가려고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뜻을 억지로 따랐지만, 이제는 모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고와의 혼인을 종료하고자합니다.

#### 다. 소결

피고는 '원고의 회피적인 성향과 평소의 성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극단적생각에 휘둘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 4. 12. 원고에게 직접 언제 이혼을 할 거냐며 최대한 서두르고 싶다고의사를 표명한 것은 명백히 피고이며, 조정이혼신청서를 접수한 2025. 4. 21.부터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진 2025. 7.경까지 수차례의 송달시도에도 폐문부재로 일관하며, 원고의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여전히 어떤 응답도 없이 이를 회피한 것 역시 피고입니다. 피고의 답변서는 혼인 기간 내내 본인의 의견만을 관철하고,이에 반박하는 원고를 정신질환이 있어 그렇다는 식으로 일관해 온 피고 본인의혼인 중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고야말로 혼인 중 사실관계를 모두거짓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서 이게 과연 같이 혼인 생활을 해온 사람의 글이 맞는지 몇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을 정도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혼인 중 피고로부터 입어 온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적었음에도, 이마저도 원고의정신적 문제로 치부하며 이를 오히려 본인이 바로잡아 온 것처럼 주장하는 피고에 원고는 더욱 극심한 충격을 입었으며, 원고는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을 재차 밝힙니다.

#### 3.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25. 4. 12. 집을 나간 뒤 평소처럼 연락하며, 피고와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 등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5. 4. 12. 밤 11시 기숙사에 가기 위해 원고가 집을 나섰다는 피고의 주장이야말로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 끝에 피고의 집요한 이혼 요구에 마침내 이에 응하며 집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였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송달절차가 계속되던 2025년 8월경까지 피고로부터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어떤 유의미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피고가 실제로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면 2025. 5. 6. 보낸 이메일을 확인한 2025. 5. 8. 이후 갑작스럽다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어떤 연락도 없다가 소장을 수령한 이후 2025. 8. 11.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갑 제9호중 2025.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메일 참조).

그러나 그 메일마저도 피고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쓰인 내용들로 가득했고, 특히 혼인 중 피고가 늘 원고를 '베드로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말해왔던 것처럼, 메일 마지막에는 '베드로 같은 최남회'라고 쓰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피고는 전혀 변하지 않고 원고의 상황을 이해하기는커녕 여전히 원고의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원고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부부상담을 받고 혼인관계를 회복하자고 호소하여 왔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원고가 정신병자이기에 이 모든 갈등이 촉발되는 것처럼 일관해온 것은 피고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게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바. 부부상담을 진행할 의사

역시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 2025. 8. 12. 원고의 답장(갑 제9호증)

4월12일 잠 싸고 나오면서 이혼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와서 원하지 않는 다고요?그날은 1층에서 비 많이 내리는데 이혼 언제 할꺼냐고 5월 초에 하자고 내가 말했더니 너무 늦는다고 4월에 하고 싶다고 한건 누나였어요.근데 이제 와서 싫다고요?어의가 없어요. 항상 거의 싸움은 누나가 만들고,난 항상 침묵하거나 분노가 폭발해도 눈 깜짝 안하는 누나보면 이제 지치고 더이상 그러기 싫어요. 내 외로움,나의 책임감,회사의 힘든 일을 이해 못하고 항상 하나님 기도만 하라는 누나의 대답,누난 나의 고통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하고 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나의 감점은 생각 안하고 해결방식만 찾는 누나의 방식.나는 항상 나쁜 분노조절잠에,극강T.아스퍼거증후군,성인ADHD 들어야하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할거처럼 취급하는 누나의 생각도 잘려요.

누나에게만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del>누나는 부부상담 가자 해도 안가고,</del>결혼전 지인들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용인에 가까이 사는 내 고딩 친구조차 한번 본적 있어요? 누나가 피해 코스프레 하면서 나에게 감정 호소 하는것도 이제 들기 싫어요.

더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 4. 결 어

원고는 위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7호증 2025. 5. 6.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

1. 갑 제8호증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수신한 일자

1. 갑 제9호증 2025.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메일

2025. 1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현** 담당변호사 이민주

수원가정법원 귀중